

명예교수 규정

제정 2000. 07. 05.

제9차 개정 2021. 1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명예교수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명예교수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교에서 일반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학문 또는 본교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인사
2. 학술 분야의 업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인사
3. 본교 총장 또는 학교법인상지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인사
(조 개정 2018.07.27.)

제3조(임용절차) ①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단과대학장이 소속 단과대학 명예교수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06.12., 2018.07.27., 2019.06.25., 2020.07.30)

② 제2조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추천은 피추천자가 퇴직하는 학년도의 해당 학기 종료일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단, 일반교원에서 객원교수로 전환한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객원교수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12., 2021.08.04.)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추천자를 명예교수로 임용한다.

④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자는 재 추천할 수 없다.

제4조(구비서류)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교수로 추천 받는 자의 이력서 1통
2. 단과대학 명예교수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한 학장의 추천서 (개정 2019.06.25., 2020.07.30)
3. 교육 및 학문상의 업적조서 1통
4.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 1통

제5조(심의사항) 명예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학장의 추천의견 (개정 2020.07.30)
2. 학문적 업적 및 학회활동 사항
3. 학교발전 공헌도
4. 기타 사회활동 및 업적

제6조(처우) ① 명예교수의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본교의 각종 행사에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
 2. 호 삭제(2018.07.27.)
 3. 학교시설의 이용 및 부속 한방병원의 의료비 혜택
 4. (호 신설 2011.11.23.) (개정2014.06.12. 2015.02.13.) 호 삭제(2018.07.27.)
- ② 명예교수는 최초 임용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강의 담당시간은 주당 3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07.27.)(개정 2019.01.09.,

2021.12.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전에 명예교수로 임용된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하는 학기까지는 주당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단, 만 65세 이후부터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1.12.1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학기 강의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강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13)

제7조(위촉기간) ①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7.30)

② 명예교수를 재위촉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6.25., 2020.07.30)

(개정 2014.06.12.) (조 개정 2018.07.27.)

[제목개정 2020.07.30]

제8조(명예교수 임용의 취소)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의 직을 면할 수 있다.

제9조(명예교수추천위원회) ① 명예교수추천위원회는 단과대학별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단과대학 내 명예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07.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07.30]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07.30]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4호는 2012학년도 1학기 강의배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임용절차) ②항은 2015년 02월 28일에 정년퇴직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부-139, 2015.02.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처우) 4항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임용되는 명예교수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부-394, 2018.07.27.)

이 규정은 2018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12, 2019.01.09.)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483, 2020.07.30.)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3조(임용절차), 제4조(구비서류), 제5조(심의사항), 제7조(위촉기간) 및 제9조(명예교수추천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 임용 또는 재위촉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팀-438, 2021.08.04.)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에 객원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는 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말일까지 명예교수를 추천할 수 있다.

부칙(기획예산팀-660, 2021.12.1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명예교수로 임용된 사람도 제6조의 개정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